

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2-47호

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보험료 납입유예 조치 등 특별지원대책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2년 8월 31일

우정사업본부장

태풍 피해지역 우체국보험 이용고객 특별지원 대책

1. 지원대상 : 전국 태풍 피해지역 우체국보험고객

2. 지원내용

가. 보험료 및 환급금 대출이자 납입 유예

- 유예기간 : '12. 9. 1. ~ '13. 2. 28.
- 유예기간 경과 후 납입방법 : '13. 3월 ~ '12. 8월 중 유예 받은 보험료(환급금 대출이자)를 분할 또는 일시 납입

나. 사고보험금 접수 시 신속 지급

- 접수관서는 접수사실을 본부 및 우체국금융개발원에 즉시 보고
- 본부 및 우체국금융개발원은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

3. 접수방법

가. 우체국보험 고객

- 재해증명서로 집중호우 피해지역 보험계약자임을 확인한 후 보험료(환급금대출이자) 납입유예 신청서를 접수

나. 구비서류

- 보험료(환급금대출이자) 납입유예 신청서
- 신분증 및 필요 시 피해사실 입증 가능 서류(재해증명서) 등

4. 시행일 : 2012. 9. 1.

【붙임】

보험료(환급금대출이자) 납입유예 신청서

1. 계약내용

계약번호	계약자	상품명	보험료(대출이자)	최종 납입년월/횟수

2. 약정내용

제1조 2013년 2월 이후 해당 보험료(환급금 대출이자)는 정상적으로 납입합니다.

제2조 2013년 2월까지의 납입 유예 보험료(환급금 대출이자)는 아래와 같이 납입합니다.

유예 보험료 (대출이자)납입 월	2013.3	2013.4	2013.5	2013.6	2013.7	2013.8
납입횟수/금액						

제3조(계약의 효력) 2013년 3월부터는 해당 월 보험료(대출이자)와 분할 납입으로 약정한 유예보험료를 상기 납입 월에 납입하며, 만약 보험료(환급금 대출이자)를 약정한 납입 월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약정한 납입 월의 익월 1일부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.

제4조(납입방법) 납입기일 까지 우체국 직원 및 우체국 FC를 통해 납입하거나, 우체국을 방문하여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
본인은 우체국과의 약정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상기의 각 조항을 확인하며,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이해 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2012년 월 일

신 청 인	(인)	주민등록번호	-
주 소		전화번호	() -
피해내용			

OO 우체국장 귀하

접수자	직·성명	접수인	확인자	우체국장(인)